

구미시공설효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기 획 행 정 위 원 회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00. 10. 19.

발 의 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 납골위주로 유도하여 장묘문화의 개선과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납골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시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시직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를 감독하며, 연1회 감사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함.

2. 수정의 주요골자

- 법인으로 위탁관리하게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여,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도록 함.
- 유골의 안치기간을 최초 15년으로 하고 이후 15년 단위로 3회연장하여 60년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함.
-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며, 연1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함.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수정(안)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관리 등)중 위탁관리하게 “한다.”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중 구미시 “생활보호대상자”를 구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업무감독)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필요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연1회 감사를 할 수 있다.”

안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존을 위한 구미시 공설효친관(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효친관(납골당)의 명칭은 구미시공설효친관(이하 "효친관"이라한다) 이라한다.

② 효친관(납골당)은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 산7 번지에 둔다.

제3조(관리 등) 효친관(납골당)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 목적이 같은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설기준) 효친관(납골당)에는 일반실, 무연고실, 외국인실을 따로 둘수있다.

제5조(유골의 안치) ①효친관(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후 분골하여 일정한 분골함에 봉안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사용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미시내 거주자
2. 구미시내 거주외국인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7조 (무연고자 유골등) 구미시 관내의 기존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은 효친관(납골당)에 안치시킬 수 있다.

제8조 (사용기간) ①유골의 안치 기간은 유언고 유골은 15년으로 하며 이후 연고자가 기간연장을 요구할 때에는 1회에 15년 단위로 계속하여 3회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무언고 유골은 안치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9조 (유골매장) 제8조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후 유언고 유골이라 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때에는 무언고로 간주하여 신문 공고후 무언고 유골과 같이 공동묘지 등에 집단 매장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효친관(납골당) 사용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등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한다.

②제3조 규정에 의하여 효친관(납골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비용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구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 (개장승인) 효친관(납골당)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 할 때에는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개장을 승인하여야한다. 이때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등) 효친관(납골당)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유골을 모독하는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하는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물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법령, 조례, 규칙 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14조(원상복구 및 변상) 효천관(납골당) 사용자 또는 관련자가 효천관(납골당)의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업무감독)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할 경우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연1회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및 관리비

(단위 : 원)

구 분 실 별	구 미 시 민			타 지 역			비 고
	계	사용료	관리비	계	사용료	관리비	
일 반 실	100,000	60,000	40,000	200,000	120,000	80,000	타 지 역 100%가산
무연고실	50,000	30,000	20,000	100,000	60,000	40,000	
외국인실	100,000	60,000	40,000	200,000	120,000	80,000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관리 등) 효전관(납골당)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 목적이 같은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u>한다</u> .	제3조(관리 등) 효전관(납골당)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 목적이 같은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u>할 수 있다</u> .
제8조 (사용기간) ①유골의 안치 기간은 유연고 유골은 15년으로 하며 이후 연고자가 기간연장을 요구할 때에는 1회에 15년 단위로 계속하여 <u>4회까지</u> 연장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기간) ①유골의 안치 기간은 유연고 유골은 15년으로 하며 이후 연고자가 기간연장을 요구할 때에는 1회에 15년 단위로 계속하여 <u>3회까지</u> 연장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구미시 <u>생원보호대상자나</u> 시장이 필요하다고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구미시 <u>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u> 시장이 필요하다고
(신설)	제15조(업무감독)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할 경우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연1회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제16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